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철용 상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여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12년 4월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오랜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하철용 상임조정위원을 만났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얼마나 되며, 의료중재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대략 3만건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병원급 6천여건, 의원급 6천여건, 한방의료기관 천여건, 치과의료기관 6천여건 등 약 2만건으로 보고, 여기에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간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소송비용의 과다로 환자측의 부담이 크고, 의료인의 방어진료로 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요. 이제 의료중재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중재원을 이용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물론 전문상담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궁금한 것을 상담 부분 해소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사고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후유장애 등을 감정하지요. 감정결과가 나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 때에는 양측의 사정을 잘 헤아려 조정결정을 하게 되지요.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 그 밖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거쳐 중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이고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첨예한 분야라 조정을 하기가 다른 분야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어떤 증상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하여야 할 것인가, 그러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 그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은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감정적 요인이 매우 강하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통상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의사측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자측이 형사고소를 해 수사기관에 불러 다니고, 거기다가 환자측에서 실행행사라도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 먼저 쌍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의 조정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환자측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조정위원이 의사인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지나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의사측도 환자측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쟁해결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은, 판결이 가지는 속성인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식의, 때로는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과거의 잘못을 판단하는 작업이라면,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창조적으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지요. 분쟁당사자에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경우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얻은 승소 판결이 ‘상처뿐인 영광’에 지나지 않을 때이겠지요.

법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느 시인은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삶의 어원이 한 군데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받침 하나만 바꾸면 사람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모음 하나 빼면 사람이 삶이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조인 역시 사람에 대한 사랑,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중재원의 일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보람도 보람이지만 현재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81년에 창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벌써 31살 된 듩직한 청년으로 성장했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언론보도로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달려갈 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축적한 조정기법 등 노하우를 다른 조정기관과 공유하면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설 조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